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05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박대출・이종욱・박정훈

김상훈 · 엄태영 · 송석준

박정하 • 조배숙 • 김소희

강승규 • 윤상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.

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,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,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, 그 외국 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 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 권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3년"을 "7년"으로, "사람"을 "사람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 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선거권) ① (생 략)	제15조(선거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	2
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	
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	
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	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	
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	3
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	
후 <u>3년</u>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	<u>7년</u>
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	
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	
록대장에 올라 있는 <u>사람</u>	사람.
<단서 신설>	다만,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
	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
	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
	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
	<u>우로 한정한다.</u>